

●평택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2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납부자의 주소지로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면허경고)부과 통지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소재지	행정처분
고○일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이하 생략)	*과태료 200,000원 *수상레저 조종면허 면허경고

4. 부과원인: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위반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납부 전용계좌 (농협 301-0260-2542-71)
 - ① 인터넷지로(giro.or.kr)에서 납부
 - ②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국고금계좌)로 계좌이체(23:00까지)
6. 납부기한: 2023.12.8.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안내사항>

1.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해양경찰서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3. 상기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2)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한 내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